

## 2014년 글로벌연구실사업 신청 관련 FAQs

<게시일 : 2014. 4. 2(수)>

### <신청지원 일반>

□ 글로벌연구실 지정 기술 분야 외 신청이 불가능한가요?

☞ 글로벌연구실사업 신규과제는 당초 제시해 드린 기술 분야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지정 기술 분야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근거로 하는 130여개 기술 분야 중 국가적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기술에 대해 지정한 기술로서 금년에는 5개 기술 분야를 지정하였습니다.

- 2014년도 GRL 신규과제 기술 분야 -

- (1) 모바일 소프트웨어 기반 지식정보 보안기술
- (2) 환경정화용 첨단소재기술
- (3) 환경·에너지 융합 수질제어 및 처리기술
- (4) 전염병 확산 방지기술\*
- (5)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\*

\* 한-EU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EU국가와의 협력과제에 한함

□ EU국가와의 협력과제에 한하는 전염병 확산 방지기술과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은 EU국가와의 협력이 아니면 지원 불가능한가요?

☞ 한-EU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EU국가와의 협력과제에 한하는 전염병 확산 방지기술과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은 EU국가와의 협력만을 지원하므로, EU가입국이 아닌 유럽의 다른 나라(ex. 스위스, 노르웨이 등)와의 협력과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. 또한, 글로벌연구실사업은 실험실 단위의 협력과제이므로 해외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기준입니다. 해외연구책임자의 국적이 EU국가더라도 해외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EU국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 불가능합니다.

□ 글로벌연구실 신청 대비 선정률은 얼마나 되나요?

☞ 글로벌연구실사업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은 사업으로 최근 3년간의 신청 대비 선정률은 6.4% 정도이며 2006년 사업 개시 후 지금까지의 선정률은 6% 내외 수준입니다.

□ 국내연구팀에 연구책임자(KPI)를 여러명 지정 가능 가능한가요? 또한 해외 공동연구팀도 두 곳 이상 지정 가능한가요?

☞ 국내 연구책임자(KPI)는 1명이어야 합니다. 또한 해외 공동연구팀을 두 곳 이상 지정하는 것은 연구자 자율로 맡기고 있습니다. 다만, 해외 공동연구팀을 두 곳 이상 지정하더라도 해외연구책임자(FPI)는 1명이어야 합니다.

□ 2차 평가는 해외평가와 발표평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2차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

☞ 2차 평가의 대상은 1차 평가 때 선정된 과제에 한하며, 해외평가는 1차 지원 시 제출한 연구계획서(Proposal part I & II)에 대하여 해외연구자에게 서면평가를 의뢰하고, 발표평가는 보완계획서(Supplementary Proposal)를 제출한 후 KPI와 FPI가 공동으로 발표를 실시합니다.

□ 보완계획서(Supplementary Proposal) 발표 시 FPI가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 때 FPI 초청과 관련된 비용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해주는 건가요?

☞ 한국연구재단에서는 보완계획서 발표평가 시 참여하는 FPI 초청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. 관련 비용은 과제를 지원 신청한 연구책임자 및 기관에서 부담해야 합니다.

### <신청제한 관련>

- 중대형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글로벌연구실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3책 5공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. 혹시 글로벌연구실 사업에서 특정 과제 수행 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?

☞ 글로벌연구실 사업은 기초연구사업 중 집단연구사업으로서 선도연구센터 및 기초연구실지원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2014년도에 신청하신 연구자분들은 3책 5공과 관계없이 신청이 불가합니다. 3책 5공에 위배되지 않거나 집단연구사업을 수행 또는 신청 중이지 않은 연구자분들께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. 2015년 5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선도연구센터 및 기초연구실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### <연구비 관련>

- 글로벌연구실 사업은 해외공동연구팀 측에 연구비를 배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때 연구비 배분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?

☞ 글로벌연구실 연구비의 국내외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. 다만, 연구비 지급은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의 협약을 먼저 맺으시고 진행하셔야 하며 협약과 관련된 형식 및 서류는 기관 자율형식에 맡기고 있습니다.

- 해외 측 간접비는 얼마까지 지급가능한가요?

☞ 원칙적으로 해외연구팀에는 간접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해외 위탁연구비 총액의 3%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### <신청서류 및 지원시스템 관련>

- 1차 접수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☞ 1차 접수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총 6개로 아래와 같습니다.

- 1) Proposal part I (Information)
- 2) Proposal part II (Research Plan)
- 3) 국내/해외 연구책임자 최근 3년간 논문실적
- 4) 국내/해외 연구책임자 최근 3년간 특허실적
- 5)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
- 6) 단위연구조직 운영확인서

- 단위연구조직 운영확인서를 제출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산학협력 단장 명의가 아닌 총장 명의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나요?

☞ 단위연구조직 운영확인서를 제출받는 목적은 글로벌연구실 사업의 기본연구단위인 '연구실'의 실제 운영 여부와 연구성과, 네트워크 구축 실적 여부를 기관장 명의로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. 그러므로 확인서는 산학협력단장이 아닌 총장(기관장) 명의로 발급하셔야 합니다.

- 연구계획서 내용 중 신청 연구자 및 참여 연구원 등의 이름, 소속기관, 직위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면 안되나요?

☞ 2014년도 글로벌연구실 신규과제부터는 연구자 아이디어의 창의성·도전성 중심의 평가를 위해 암맹평가(Blind Review)를 실시합니다. 이는 연구자 역량에 대한 후광효과(Halo Effect)를 배제하여 연구내용이 우선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. 따라서, 신청 연구자의 이름, 소속기관 등을 알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는 등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연구계획서 제출 시 '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'는 KPI와 FPI만 제출하면 되나요?

☞ 네, 맞습니다. 연구계획서 제출 시에는 KPI와 FPI만 제출해 주시고 보완계획서 제출 시에는 모든 연구원(연구보조원 포함)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